

05 해외통상애로

식품 중국규제 동향 및 대응전략



식품 중국규제 동향 및 대응전략



김지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국지부장

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한중 양국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협력 강화 기조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대중 수출 확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중국 현지에서 수출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관도 올해 더 잦아진 한국 기업의 중국인증 관련 문의와 의뢰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한국 소비재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최근 특히 문의가 잦아진 식품에 대한 중국 시장 상황, 최신 규제 동향 및 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식품 중국시장 규모

한국산 식품의 세계 2위 소비 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2위) 중 하나인 중국의 식품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1조 6119억 달러 (약 ₩2,386조원)이다. 수년간 이어진 불경기 영향 속에서도 이 거대한 시장은 2025년 전년 대비 7.6% 성장했고 2026년에도 동등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5.9억 달러로, 수출 대상국 1위인 미국(수출액 18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많은 한국 식품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국 수출을 위해 반드시 사전 해결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인증(무역기술규제)’이다.



인증과 표준

우리는 해외 여행, 해외 출장을 갈 때 미리 방문국의 비자를 신청해 받는다. 제품도 수출 전에 미리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능을 검증받고 비자를 획득하는데 이를 ‘인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인증을 획득한 검증된 제품도 해외 수출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출 대상국의 인증을 신규 획득해야 한다. 국가마다 표준이 달라 발생하는 일이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민 건강·안전 보호,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데, 각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관습적 사정에 따라 국제표준과 다른 고유의 표준을 운영하거나, 제·개정 속도가 지연되어 급변하는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중국인증 시스템 변화

중국은 2018년 국무원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 인증·표준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공상국(SAIC), 질량감독관리총국(AQSIQ), 식약국(CFDA) 등 장관급 조직들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출범시켰고, 인증 획득 단계 뿐 아니라 제조·유통·판매 등 사후관리 단계까지 하나의 통합된 조직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일원화했다. 수년간 추진한 중앙 정부 주도의 개선 작업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면서, ‘관시’(关系. 개인 인맥. 비공식 연출)를 통한 우회적 방법의 인증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기존에 ‘관시’를 통해 우회 획득한 ‘인증’은 연장 갱신 등 시점에서 서류 부적합, 미비 등의 문제가 붙어져 모두 말소되고 있다. 또한 인증 최종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 심사·평가 등도 더이상 담당자 1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가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검토하도록 하여 투명성도 제고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에서 정상적인 절차, 방법을 통한 인증 획득만 가능하니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곤란에 직면하는 한국 기업이 없어야 하겠다.



중국 식품표준

중국 박람회, 바이어 상담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 한국기업은 자사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미 수출 준비가 이미 완료돼 있다고 과신하는 기업도 자주 만난다. 우리는 항상 중국 규제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 기관이 함께 주도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하는데, 이런 기업은 좀처럼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판매했습니다. 한국에서 검증됐으니

중국에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 중국어 잘하는 직원이 있어 직접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수입상이 있어서 다 해줍니다’ 등이 우리가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다. 이처럼 My Way를 외치며 도움을 사양하는 기업을 만날 때가 정말 안타깝다.

국가마다 표준이 다르다. 한국에선 사용에 전혀 문제없는 원료 성분들도 중국 표준에서는 일반식품에 사용 금지, 사용 제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식물 추출물, 야생 식물, 한약 재료, 기능성 원료, 각종 첨가제 등이 한국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대부분 제한된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한국산 제품의 상당수(약 70~80%)는 성분에 대한 레시피 조정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해외인증 전문대응팀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은 수시로 개정되는 해외표준, 규제 등을 정확히 인지·이해하고 제품 R&D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 아래 몇몇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사례① 중국에서 ‘오미자’는 보건식품 원료로 분류되어 오미자 차를 일반식품으로 수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인증 난이도가 높고 인증 비용이 높은 보건식품 등록은 대기업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오미자 차의 중국 수출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례② 한국에서는 각종 간편식 식품에 ‘원당(비정제 사탕수수당)’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정제된 설탕만 사용이 가능해 원료 대체가 요구된다.

사례③ 사탕, 식음료 등에 유화제로 많이 사용되는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의 경우, 중국에서는 최대 가능 사용량이 10.0g/kg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대부분 한국 제품은 성분 조정이 필요하다.

사례④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서 막걸리, 음료 등에 보편 사용되어 온 아스파탐은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막걸리 등 발효주에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수출을 위해선 대체 원료로 변경해야 한다.

이처럼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식품표준에 따라 성분 레시피를 전면 재검토하여 원료 성분을 대체, 재조정, 함량 축소 또는 삭제하는** 과정을 제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해외식품기업 중국해관 신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중국해관총서에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해당 제도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248호령 '21.4.12.공포)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중해관 해외생산기업등록

● 중국해관총서 (GACC)

- (대상) 해외 식품 생산·가공·저장 기업
- (일반 가공식품) KTR 대리 등록 가능
- (韓식약처 추천 등록 18개 품목) 육류, 수산물, 유제품, 야채 및 견과 등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원' 추천



중국 식품 규제 최신동향

최근 중국 식품규제(식품첨가제 사용표준 및 식품라벨규칙)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한국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식품첨가제 표준 개정(엄격)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2024)》이 10년만에 대폭 개정(엄격·강화)되었다. (2014년판 대체). 한국보다 엄격한 식품첨가제 사용 규제를 운영해온 중국이 해당 표준을 10년만에 개정하며 사용 제한을 더 강화한 것이다.

2024년 3월 12일 개정 발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卫生健康委、市场监管总局)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使用标准》GB 2760-2024

사용금지 대상 확대

● 주요 사용금지 첨가제

- 디저트, 빵류: dehydroacetic acid (탈수소 아세트산, 脱氢乙酸及其钠盐_脱氢乙酸), sodium dehydroacetate (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脱氢乙酸及其钠盐_脱氢乙酸钠)
- 통조림(육류 통조림): ε-聚赖氨酸(ε-플리리신, ε-polvlysine), 乳酸链球菌素nisin, 山梨酸及其钾盐_山梨酸 sorbic acid, 山梨酸及其钾盐_山梨酸钾 potassium sorbate 등
- 식초: 冰乙酸 (아세트산, acetic acid)
- 증류주: β-胡萝卜素(베타카로틴, beta-carotene synthetic) 등

(2) 식품 포장규칙 개정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2025)>,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28050-2025)>이 14년 만에 전면 개정(2011년판 대체)되었다.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예포장식품라벨통칙》

《食品安全国家标准预包装食品标签通则》(GB7718-2025)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예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食品安全国家标准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GB 28050-2025)

(목표) 식품안전보장, 영양건강촉진, 소비자권익보호, 생산규범화 및 관리감독효율화 강화

(시행) 2년 과도기(신·구판 병행운영) 거쳐, 2027년 3월16일 정식(전면) 시행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8대 알러지 유발물질 표기 의무화), (나트륨·지방·당 과다섭취 경고문구 의무화), ('무첨가'·'무함유' 표현금지), (영양성분 추가 표기 요구_포화지방, 당) 등이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서둘러 표기사항을 新표준에 맞도록 업데이트해야 향후 불필요한 비용 발생(유통제품 회수, 라벨 변경, 폐기, 벌금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중국 표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한국 라벨 표기를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부착하여 수출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전량 리콜, 폐기, 벌금 처분을 받는 한국기업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

(3) 중국 기업형 식파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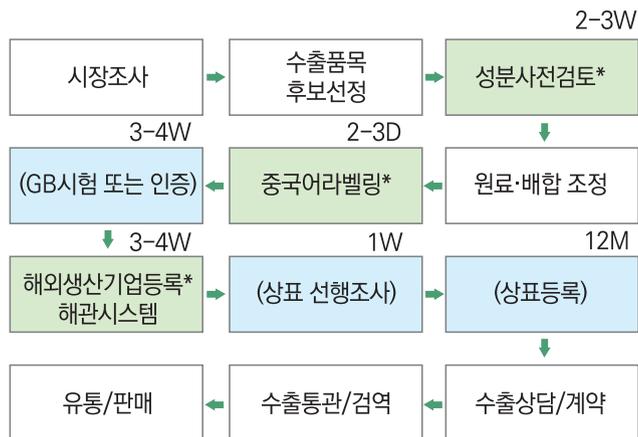
중국에는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식파라치가 영리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적합 식품(규제 미준수)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는 제조·유통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10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발견한 부적합 식품을 한화 5백만 원씩을 여러 매장에서 분할 구매한 후 1~2억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한국 식품기업은 앞서 설명한 유의 사항과 최신 동향 등을 잘 숙지하여, 중국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중국 식품 규제 대응 전략

일반식품 수출단계

필수사항*

● 수출 상담/계약 전 사전 검토 필수



● 보건식품 : SAMR(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전 비안·등록 필수

한국 정부는 한국산 식품의 안심 수출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중국 식품규제 전담 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 식품 규제 대응의 핵심사항인 중국 표준에 의거한 ①원료 성분 사전검토, ②중국어 라벨링 초안 작성, ③중국해관의 중국어 라벨링 확인증 발급, ④중국해관 해외생산기업등록, ⑤상표등록 선행조사, ⑥상표등록 등 서비스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이 함께 지원·수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의 실제 자부담이 적고(정부 지원금 비중 높음), 신청이 간편하고 단기간 내 완료(1~2개월)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외인증 전문성이 높은 한국정부 산하 시험인증기관(KTR)이 원스톱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뢰도와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 관심있는 식품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무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KTR 중국지부	IP전화(국가번호생략)	Email
중국인증 무료상담·지원사업 안내 (aT 현지화지원사업 등)	02-507-8078	ktrshfood@ktr.or.kr



KTR은 별도 자체 정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최대 1억원 지원)을 통해 중국 보건식품 인증 등도 지원하고 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 정부 지원사업과 수출지원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중국 식품 규제와 식파라치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심 수출을 확대하길 기대한다.

